#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27 발의연월일: 2022. 5. 17.

발 의 자:윤재갑·최기상·이개호

김민철 • 신정훈 • 위성곤

소병철 · 홍문표 · 전용기

주철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의 63퍼센트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과 숲은 예로부터 의식 주의 바탕이자 문학, 예술, 철학 등 우리 민족 정서의 근원이었음.

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산·트레킹 등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 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,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,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, 국내외 교류협력,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"산림문화"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·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, 즐기고, 체험하고,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1의2. "산림휴양"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
제6장의 제목 "산림문화자산의 지정·관리"를 "산림문화의 진흥"으로 한다.

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산림문화의 확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·수집·기록·보전하고, 이를 학술대회, 세미나, 전시, 번역·출판,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

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28조의3(전문인력의 양성·활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 구와 교육,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·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8조의4(국내외 교류협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, 학술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8조의5(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)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

- 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
-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2조의2(보고·검사)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-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4.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
-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'제3항까지의'를 '제4항까지의'로 한다.
  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산림문화·휴양"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 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
<신 설>

2. ~ 9. (생략)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・관리

<신 설>

개 정 아

- 1. "산림문화"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 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 용하여 보고, 즐기고, 체험하 고,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.
  - 1의2. "산림휴양"이란 산림 안 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  - 2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

제28조의2(산림문화의 확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 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 **굴・수집・기록・보전하고**, 이 를 학술대회, 세미나, 전시, 번 역・출판, 콘텐츠 또는 프로그 램의 개발 · 운영,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

<신 설>

<신 설>

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8조의3(전문인력의 양성·활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, 사회적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·육 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 런하여 추진하여야 하고, 필요 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8조의4(국내외 교류협력)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 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 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연구,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<신 설>

- 제28조의5(산림문화진흥 전문기 관)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 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 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 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산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

<신 설>

제33조(청문) 산림청장 또는 시ㆍ 제33조(청문) -----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 소 절차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의2(보고 · 검사) ① 산림청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 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
- 제38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 제3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 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, 시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한다.</u>
⑤ 제4항까지의
,